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6512호)

2025. 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기타재가급여로 제공되는 “용구”를 “보조기기”로 변경	3

I. 개요

1. 김윤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6512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윤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12. 16.

(3) 회 부 일 : 2024. 12. 1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로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기타재가급여가 있음. 그런데 기타재가급여로 제공되는 용구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하고 있어 행정부의 판단에 따라 용구의 범위가 결정되고 있음.

반면, 「국민건강보험법」은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기기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어 단순 용구가 아니라 보조기기로 그 범위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기타재가급여로 제공되는 용구의 범위를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기기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제1항제1호바목).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기타재가급여로 제공되는 “용구”를 “보조기기”로 변경

가. 개정안의 내용

□ 현행법은 장기요양급여 중 기타재가급여 대상으로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규정상의 “용구”를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로 변경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 -- ----- -----.
1. 재가급여	1. -----
가. ~ 마. (생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u>용구</u> 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	바. ----- ----- ----- ----- <u>보조기기</u>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

으로 정하는 것	<u>조기기를 말한다</u>)----- ----- ----- -----
2. 3. (생 략) ② ~ ③ (생 략)	2. 3.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 시행일: 공포한 날

나. 검토의견

-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며¹⁾, 재가급여 중 “기타재가급여”는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이하 “복지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의미함.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가급여

가.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나.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다.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라.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마. 단기보호 :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바.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3. 특별현금급여

가. 가족요양비 : 제24조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장기요양급여

나. 특례요양비 : 제25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례장기요양급여

다. 요양병원간병비 : 제26조에 따라 지급하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급여

- 이에 근거하여 동법 시행령²⁾에서는 기타재가급여를 “기타재가급여는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³⁾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기타재가급여) 법 제23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기타재가급여는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3)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조(급여방식 및 급여품목)

③ 복지용구 분류체계별 급여품목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복지용구 분류체계별 급여품목(제2조제3항 관련)

1. 자세

수급자의 자세나 위치를 변화시키거나 필요한 시간 동안 같은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조하거나 이와 관련된 돌봄을 지원하는 목적

가. 자세변환

한 자세에서 다른 자세로 바꾸기를 보조하거나 이와 관련된 돌봄을 지원하는 목적의 제품

1) 자세변환용구

나. 자세보조

수급자가 편안한 자세로 신체를 유지하거나 조절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목적의 제품

1) 전동침대

2) 수동침대

다. 욕창예방

욕창이 우려되는 신체 부위에 적용했을 때 체압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어 욕창 발생 위험을 경감시킬 수 있는 목적의 제품

1) 욕창예방방석

2) 욕창예방매트리스

2. 이동

수급자가 안정적이고 독립적으로 걷거나 이동하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보조하거나 이와 관련된 돌봄을 지원하는 목적

가. 이동보조

수급자가 걷거나 전신을 이동하는 것을 보조하거나 이와 관련된 돌봄을 지원하는 목적의 제품

1) 성인용 보행기

2) 지팡이

3) 수동휠체어

나. 이송보조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를 필요한 장소나 위치(침대로부터 휠체어, 휠체어로부터 의자 등)로 이동시키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제품

다. 환경지원

수급자가 안정적으로 걷거나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제품

1) 안전손잡이

2) 경사로(실내용·실외용)

3. 안전

수급자가 일상에서 일반적으로 노출되는 신체 상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목적

가. 관찰알림

실내·외 환경에서 수급자의 활동 상태를 관찰하여 필요에 따라 경보를 전하는 목적의 제품

1) 배회감지기

나. 신체보호

수급자가 일상생활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부상(넘어지거나 부딪치는 등)을 방지하거나 신체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목적의 제품

1) 미끄럼방지용품

4. 청결

수급자가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신체를 씻고 말리는 등의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보조하거나 이와

에서는 급여대상인 복지용구 급여품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건강보험공단은 재가급여 이용 수급자 1인당 연 160만원 한도로 (본인부담률 15%)⁴⁾ 복지용구 구입·대여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총 3,379억원의 복지용구 관련 기타재가급여가 지급되었음.

관련된 돌봄을 지원하는 목적

가. 목욕보조

목욕이나 샤워를 하는 것과 같이 전신을 씻는 것을 보조하거나 이와 관련된 돌봄을 지원하는 목적의 제품

1) 목욕의자

2) 이동욕조

3) 목욕리프트

나. 세정보조

얼굴, 구강, 머리, 항문 등과 같이 신체 일부를 씻는 것을 보조하거나 이와 관련된 돌봄을 지원하는 목적의 제품

5. 배설

화장실까지의 이동이나 배설 후 뒤처리 등 배설 처리 과정의 수행을 어려워하는 수급자를 보조하거나 이와 관련된 돌봄을 지원하는 목적

가. 배설처리

수급자의 배설 처리를 적시에 할 수 있도록 알려주거나 배설물을 모아 처리할 수 있도록 배설활동을 보조하거나 이와 관련된 돌봄을 지원하는 목적의 제품

1) 간이변기

2) 이동변기

나. 위생

배뇨/배변감 인지가 어려운 수급자의 배설물이 유출되지 않고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목적의 제품

1) 요실금팬티

6. 식사

수급자가 준비된 식사를 도구를 이용하여 스스로 섭취할 수 있도록 보조하거나 이와 관련된 돌봄을 지원하는 목적

가. 섭취보조

팔의 굽힘이나 손의 움직임 등이 어려운 경우에 음식의 섭취를 직접적으로 보조하는 목적의 제품. 단, 조리나 설거지, 병이나 캔 열기 등 식사 준비 또는 식후 정리를 위한 목적의 제품은 제외

나. 식사지원

식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을 예방하거나 식기류의 미끄럼방지 등 식사 과정을 지원하는 목적의 제품

7. 인지

수급자가 일상생활 활동을 수행하는 데에 인지기능 저하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인지·기억기능을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목적

가. 기억알림

수급자가 반복적이거나 특정한 시점에 해야 하는 활동을 기억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저장했다가 계획된 시점에 알려주는 기능을 가진 제품

나. 기능보조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수급자가 본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보조하는 목적의 제품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부담금) ① 제23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특별현금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이용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수준 등에 따라 본인부담의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본인부담금)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 복지용구 품목별 연간 급여액 현황 >

(단위: 천원)

복지용구 품목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261,090,643	294,075,456	337,932,933
이동변기	15,170,547	16,734,406	17,549,163
목욕의자	13,949,598	15,403,486	17,381,454
안전손잡이	27,829,950	32,777,575	41,531,474
미끄럼 방지용품	21,922,628	20,972,354	25,947,629
간이변기	308,921	329,315	342,437
지팡이	5,065,719	5,584,671	6,558,333
욕창예방방석	10,755,639	11,289,259	12,963,179
자세변환용구	1,915,872	2,521,671	3,008,203
성인용보행기	21,275,929	26,065,011	33,404,306
요실금팬티	18,645,235	20,716,313	23,449,216
경사로(실내용)	558,532	735,478	791,523
수동휠체어	38,835,694	44,733,254	49,277,418
전동침대	71,074,841	81,030,164	88,791,157
수동침대	15,879	9,830	6,394
이동욕조	183,914	185,408	169,497
목욕리프트	-	-	-
배회감지기	510,334	432,795	354,315
경사로(실외용)	248,876	313,657	384,627
욕창예방 매트리스	12,822,537	14,240,809	16,022,610

자료 : 보건복지부

□ 개정안은 기타재가급여로 제공되는 “용구”를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기타재가급여의 범위를 확대하여 노인등에 대해 더욱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첫째, 현행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

원 등을 행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⁵⁾, 이에 따라 기타재가급여로서 수급자인 “노인등”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고 있는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⁶⁾은 보조기기 지원 대상으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인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⁷⁾에서는 “보조기기”의 범위에 “복지용구”를 포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11.>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6)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인·노인 등의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말한다.

2. “보조기기”란 장애인등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기구·장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보조기기의 종류)

①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개인 치료용 보조기기
2. 기술 훈련용 보조기기
3. 보조기 및 의지(義肢)
4. 개인 관리 및 보호용 보조기기
5. 개인 이동용 보조기기
6. 가사용 보조기기
7. 가정·주택용 가구 및 개조용품
8. 의사소통 및 정보전달용 보조기기
9. 물건 및 기구 조작용 보조기기
10. 환경 개선 및 측정용 보조기기
11. 고용 및 직업훈련용 보조기기
12. 레크리에이션용 보조기기
1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장애인등을 위한 기계·기구·장비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조기기

함하여 넓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에는 개인 치료용 보조기기, 기술 훈련용 보조기기, 고용 및 직업훈련용 보조기기 등 노인등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기타재가급여와 성격이 다른 품목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조기기 >

- 개인 치료용 보조기기
- 기술 훈련용 보조기기
- 보조기 및 의지(義肢)
- 개인 관리 및 보호용 보조기기
- 개인 이동용 보조기기
- 가사용 보조기기
- 가정·주택용 가구 및 개조용품
- 의사소통 및 정보전달용 보조기기
- 물건 및 기구 조작용 보조기기
- 환경 개선 및 측정용 보조기기
- 고용 및 직업훈련용 보조기기
- 레크리에이션용 보조기기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장애인등을 위한 기계·기구·장비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조기기
 - 고령친화제품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 "노인이 주로 사용하거나 착용하는 용구·용품 또는 의료기기"로서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한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대상
 - 보조기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에서 규정하는 보조기기
 - 보조공학기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규정하는 보조기기
 - 보철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2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기기
 - 복지용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및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는 보조기기
 - 재활보조기구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2조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에서 규정하는 보조기기
 - 정보통신보조기기 : 「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로 설립된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규정하는 보조기기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조(보조기기 품목 등) 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품목 및 분류체계는 별표1과 같다.

②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조기기는 별표2와 같다.

[별표2] 다른 법령에 의한 보조기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품목

1. 고령친화제품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 "노인이 주로 사용하거나 착용하는 용구·용품 또는 의료기기"로서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한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대상
2. 보조기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에서 규정하는 보조기기
3. 보조공학기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규정하는 보조기기
4. 보철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2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기기
5. 복지용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및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는 보조기기
6. 재활보조기구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2조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에서 규정하는 보조기기
7. 정보통신보조기기 : 「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로 설립된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규정하는 보조기기

- 둘째, 안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기타재가급여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야 하므로 하위법령 개정 일정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등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다.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 현행법과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각기 다른 취지와 목적을 지니고 있고,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지원대상에 장애인, 노인등, 국가유공자 등의 필요와 욕구를 포함하여 보조기기를 지원하고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원범위를 벗어나며, 보조기기의 품목 범위 역시 장애인등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기구·장비로 폭넓게 정의하고 있어 복지용구의 품목 범위를 넘어서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견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기타재가급여로 제공되는 용구의 범위

를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기기로 규정할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목적이나 법령의 복지용구 제공의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에서 정한 수급자의 특성에 맞는 장기요양급여로서의 ‘기타재가급여’의 지원 목적 및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503